

전주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9852 판결 [부당이득금 등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피고, 피항소인 F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유현경, 공익법무관 김덕현, 한종현,

항승중

변론 종결 2020. 4. 22.

판결 선고 2020. 5. 20.

제 1 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가단26977 판결

환송 전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4395 판결

환 송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9,6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에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 다음날'로 변경함으로써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2011. 7.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0. 8.경 합의에 의하면 2011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이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고,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2011. 7.분까지의 피고의 임금은 원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그 차액만큼 임금을 초과지급받은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1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사납금이 1일4,000원씩 인상되었고, 2011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은 2010. 8.경 합의에 따라 2010. 7.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부터 2011. 7. 31.까지의 실제 근무일수에 사납금 인상분 1일 4,0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전주시에서 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원고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Y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원고가 2008. 10. 24. 체결한 2008년도 임금협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1일 사납금은 '1일 2교대의 경우 73,000원 또는 77,000원, 1일 1차의 경우 95,000원 또는 97,000원'이다.

나. 한편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29.부터 2010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던 중, 2010. 8.경 '노·사 쌍방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10. 7. 1.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이 포함되는 단체(임금)협약 체결시체결시점을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다. 단, 소급 적용시 회사는 인상된 월임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각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임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그 후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원고는 피고 등에게 2011. 7.분까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7. 10.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교섭을 거쳐 2011. 9. 9.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을 보면,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된 '1일 5시간(1년 미만 4시간 20분), 주 30시간'이고, 1일 사납금은 4,000원을 인상하였으며, 그 유효기간은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이다.

바. 피고는 2010. 7.경부터 2011. 7.경까지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등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합의 및 2011년도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피고 등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창민, 판사 조지환, 판사 나상훈